

해 산 및 채 권 신 고 공 고(2차)

아람 공공임대7호 전문사모투자유한회사는 2019년 8월 6일에 사원 총회의 결의를 사유로 해산하였으므로 당 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는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사로 신고하여 주십시오. 만일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때는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에서 제외됩니다.

2025년 09월 08일

아람 공공임대7호 전문사모투자유한회사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7길 22, 802호 (여의도동,태양빌딩)

청산인 아람자산운용주식회사